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참 묘한 표현이다.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운용원리가 다른데 정치형태를 규정하는 민주라는 개념을 경제와 끌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시민이 동등한 정치 권리로 행사하는 즉, '1인 1표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꽤 친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 원리가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가는 '1인 1표제'보다는 '1달러 1표제'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원리로 다수가 원한다고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제도 만드는 것을 선호할 리가 없다. 그 보다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들이 적어도 경제활동을 최대한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은 지금 미국이 1달러 1표제 식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급격히 확대되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주로 정치적 결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간된 '불평등의 대가'라는 저서에서 시장 질서가 정치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규칙이 주로 상위 1%의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행태를 비판한다.

종교칼럼

지난해 총선·대선을 계기로 촉발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범위, 근거, 구체적 정책 등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전히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다.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그런데 국가가 적절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 즉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경제적 민주주의는 20세기 유럽 사회 민주주의 운동 이념의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회운동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에도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많은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와 캠페인을 벌린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경제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권력을 나누어 주어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다수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자 발터 오이겐 등 일련의 학자들은 히틀러 치하의 전제주의 통제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비판의식에서 이를 대체 할 경제체제를 구상하게 된다. 히틀러의 과도한 국가 개입 통제에 대한 반동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정립한다. 국가는 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인 거래규칙을 제정해서 시장에 적용할 뿐 시장경제의 운용과정에는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경제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절차 민주주의가 태동 한다. 2차 대전 후에 서독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초래하는 불공평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공동결정 이론을 질서 자유주의 원리에 보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시장경제' 체계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서독의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가져온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자유시장경제의 후유증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이론을 수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이나 토마스 할 그린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의 적극적 자유 실현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기초교육, 보건, 주거 등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수정한 자유주의의 사상을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1879년에 헨리 조지라는 저널리스트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사회 예론을 조성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부작용, 즉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이 불합리한 토지 소유제도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고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 가치세를 제안한다. 이러한 이념은 영국과 미국의 경제 사회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았는데 지난차례 세부 사항에, 또 온갖 이슈에 이를 적용하여 초점을 흘뜨리는 것보다 소득 양극화와 공정거래 질서라는 우리의 핵심 이슈에 맞춰 사회정의 구현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社說

국립 광주과학관 개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호남 유일의 국립광주과학관이 완공된 지 7개월이 넘도록 개관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간 45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 부담을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고심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월 시설 유지비로 70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하니 한심하기 짜이 없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북구 오룡동 첨단 과학산업단지내 9만8248㎡ 부지에 848억원(국비 594억원·시비 254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56개 주제 150여개의 최첨단 과학전시물이 배치돼 호남 지역 과학 꿈나무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립 시설인 점을 들어 전액 국비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지난 2008년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자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사실 광주시가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한 것은 100% 국비로 운영되는 과천

과 대전 국립과학관과의 형평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주와 함께 과학관을 건립한 대구시와 2015년 과학관 완공을 앞둔 부산시가 최근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광주시만 버티는 형국이 돼버렸다.

기뜩이나 어려운 자자체 살림을 감안하면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광주시의 입장은 심판에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버티기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여론도 뻔한 시일 내 타협점을 찾아 여름방학 전에 개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실리없는 고심은 이제 끝내야 한다. 대화로 푸는 것이 순리다. 정부당국과 광주시는 조속히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도 광주시의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도 기존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소외지역 배려차원에서 전향적인 협상을 통해 실리에 나서길 바란다. 과학관 개관은 손꼽아 기다리는 지역 과학 꿈나무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줄 수는 안된다.

'전두환 추징법' 제정 새누리당이 나서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민족천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두환씨의 비자금 징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법'을 제정해 비자금을 환수하지는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은 대통령이나 국무 위원 등 전·현직 최고위 공무원이 법규를 악용해 주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불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는 법이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에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재국씨에게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숙희에게는 추징금을 미납하고